

# 평창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4. 12. 17(금) 우강호의원의외 6
- 나. 회부일자 : 2004. 12. 21(화)
- 다. 상정일자 : 2004. 12. 23(목) 제11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4. 12. 23)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우강호 의원)

가. 제안이유

- 본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3조 및 제6조와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평창군내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통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지역 및 국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포함한 보다 안전하고 신선한 우리 농·수·축산물 사용을 통하여 국민식생활 개선 및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학교급식지원의 기본원칙 규정.(안 제4조)
- 본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치단체는 3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여야 하고, 또한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여야 하며 생산지에서 직접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안 제5조)
-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해야 할 사항 규정.  
(안 제7조)
- 학교급식대상자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할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설치(안 제9조)

###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박태영)

- 가.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법과 관련한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교육인적 자원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 및 보건복지부 관할하의 영유아보육 시설을 대상으로 학생의 급식을 위해 재정을 지원함은 물론, 우수 농수산물을 사용토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 나. 지방자치단체의 급식비 예산지원으로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킴은 물론, 원활한 학교급식으로 성장기 학생의 건강권 확보와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농수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 하며, 특히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였는 바,
- 다. 이는, 현재 시급한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급식의 질 향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우 바람직한 조례제정이라고 판단되며,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라. 기타 법령의 형식이나 자구에는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심 사 결 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